
「행정심판 비용 지원 관련」
예산 전용 보고

2019. 6.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행정심판 비용 지원 관련」 예산전용 보고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전부인용 재결을 받은 청구인에게 심판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전용을 한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18. 1. 4. 시행)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8. 5. 17. 시행)
-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행정심판 비용 지원 관련 개요

○ 조례 제정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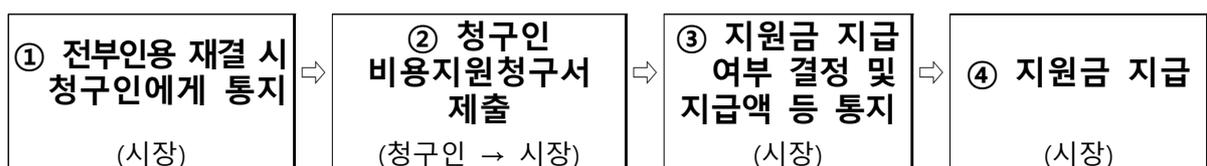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 : '17. 9. 13.
- 시의회 기경위 조례안 수정가결: '17. 11. 28.
- 시의회 본회의 의결 : '17. 12. 15.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8. 1. 4.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 '18. 5. 17.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재결(조례 시행일인 2018. 1. 4. 이후 재결된 사건)을 받은 청구인

○ 지원금액

- 전부인용 재결을 받은 행정심판 청구 사건 : 40만원
- 전부인용 결정을 받은 집행정지 신청 사건(단, 본 심판이 인용된 경우) : 10만원

○ 지급절차



예산전용 발생 사유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는 최호정 의원이 발의(2017. 9.) 하여, 2017. 12. 15. 시의회 본회의 의결 후, 2018. 1. 4. 공포 및 시행됨.
- 위 조례에서는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원하도록 정하였고, 시행규칙이 2018. 5. 17.자로 마련됨에 따라, 비로소 지원금액이 확정되었는바, 2018년도 예산에 해당 지원비용을 편성할 수 없었음.
- 2018년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전부인용 재결을 받은 사건은 6건이고, 이 중에서 본안사건 5건에 대한 비용 지원 신청이 들어왔음(2018. 12.).
- 행정심판 본안사건 비용 지원금 40만원×5건 = 200만원 소요
- 심판비용은 기타보상금에서 지급하여야 하나, 2018년 행정심판 예산에 기타보상금이 편성되지 못하였는바, 2018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심판비용을 지급하고자 함.

예산전용 내역

- 전용 요구액 : 2,000천원
-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법무행정 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행정심판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55,090	-	△ 2,000	253,090
		행정심판 위원회 운영	기타보상금	-	2,000	-	2,000

행정심판 비용 지급 내역

- 2018. 12. 13. : 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전용 승인(2,000,000원)
- 2018. 12. 14. : 비용 신청이 들어온 5건의 본안사건에 대하여 200만원 지급